

# 군산신역세권 우미 Lynn **센텀오션**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기한	2021년 12월 31일(금) ~ 2022년 1월 6일(목) 16시 도착분까지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건본주택 방문접수
수신처	군산시 미장동 511-3번지 우미린 모델하우스 (대표번호 : 063-732-9800)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은 방역패스를 소지한 당첨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소지 고객은 별도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안내

필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인터넷청약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부양가족)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관련"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단신부임 입증서류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인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분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임)	
	○	복부확인서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부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분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입증서류)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
	○		기본증명서 또는 출생확인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에 필요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군산신역세권 우미 Lynn **센텀오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외별이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맞벌이	100%초과 ~120% 이하	6,030,161원~	7,094,206원~	7,094,206원~	7,393,648원~	7,778,024원~	8,162,400원~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8,872,376원	9,333,628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외별이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7,094,206원~	7,094,206원~	7,393,648원~	7,778,024원~	8,162,400원~
		맞벌이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8,513,047원~	8,513,047원~	8,872,377원~	10,889,232원	9,794,880원~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외별이	14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맞벌이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신청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통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접수장소	

# 군산신역세권 우미 Lynn **센텀오션**

## ■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초과자)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row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8(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오지 않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